

朝鮮初期 言官에 관한 研究

—言官言論과 王權의 相關係—

崔 承 熙*

1. 序 言

言官은 言論을 職責으로 하는 官僚를 指稱한다. 朝鮮初期의 言官은 臺諫 즉 司憲府와 司諫院의 官員으로 보고 있으나 筆者는 集賢殿의 官員도 言官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¹⁾.

朝鮮時代의 言官制度의 源은 中國의 制度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中國의 制度는 高麗에 들어와서는 고려적인 言官제도로 발전하였으며, 그것이 朝鮮에 들어와서는 조선적인 언관제도로 발전하였던 것이다⁽²⁾.

조선왕조 개창기의 정선적 지도자들은 유학자였고, 따라서 그들의 이상은 유교정치에 있었다. 그들은 中國의 古代와 같이 언론이 발달되는 정치를 이상으로 삼았으나 그것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言官에 의한 言論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언관의 언론을 통하여 君主의 과오나 專制를 막고 官制의 紀綱을 숙정하며 정치의 시비를 가려서 유교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언관제도의 이상이었다.

* 啓明大學 副教授(韓國史 專攻)

(1) 拙稿, 《朝鮮初期 言官에 관한 研究》〈集賢殿의 言官化〉, 韓國史論 1. (서울大, 韓國史學會 1973. 5.) 참조.

(2) 拙稿, 《朝鮮初期 言官에 관한 研究》〈臺諫制度의 成立과 그 機能의 分析〉 韓國學論集 1. (啓明大學 1973) 참조.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는 언론이 자유로왔던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조선 초기에 있어서 언론의 길은 매우 좁은 것이었다. 申聞鼓의 제도가 있었으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儒生의 上疏가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方法과 절차가 까다롭고 또 권력에 제재되어 隨意, 隨時로 할 수 있는 것이 못되었다. 또 왕이 즉위하거나, 천재지변이나 政治的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때 求言이라 하여 중앙과 지방의 대소 관리와 閑良·耆老·軍民 등에게 上言할 기회를 허락하였으나, 이때에도 대개 몇몇 관료의 上言으로 그쳤던 것이지 진정한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초기의 언론은 결국 언관의 言論이 중심이 될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언관의 언론이 어느 시기나 그 이상과 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때로는 언관을 구성한 사람들의 성분 여하에 따라서, 때로는 군주나 집권자의 언관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性向에 따라서, 言官의 언론은 그 내용의 변화를 가져왔고 활동의 消長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언론활동에 역사성을 부여하려면 언관의 언론과 왕권(또는 執權者)과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本稿에서는 주로 王權(또는 權力)은 언관의 언론에 어떻게 작용하였고, 언관의 언론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하여 당시의 언론의 분위기와 정치적 성격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2. 太祖朝의 王權強化와 言官言論

(1) 臺諫(言官)의 性分構成

조선왕조의 개창기의 정치권력의 중심은 都評議使司였다. 그런데 도평의사사에 들어갈 자격은 門下府, 三司, 中樞院의 三品以上の 高級官僚 29명으로서 그 자리는 대개 開國功臣이 차지하였다. 言官도 정치적

으로 중요한 존재였으나 門下府·三司·中樞院과 같이 政治의 주체적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고려조에서 이미 현직(顯職)을 지낸바 있거나 老壯의 개국공신이 言官으로 취직할 가능성은 적은 것이었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太祖代의 言官의 身分構成을 밝히는 일은 당시의 言官의 性格과 역할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太祖朝의 言官의 身分를 분석하기 위하여 <表 1>과 <表 2>를 작성하였다.

<表 1> 太祖朝 臺官의 身分 分析表

人 名	年別	職 銜	家 門	出 身	前朝重要經歷	備 考
閔 開	1	大司憲	典理判書朴의子	文 科	知申事, 大司憲	李·推戴反對
沈孝生	1	中 丞	知錦州事仁立의子	文 科	門下舍人·掌令	開國功臣 3등
南 在	1	大司憲	檢校侍中乙蕃의子	進 士	代言·兼執義	개국功臣 1등
李 原	2	侍 史	守門下侍中崑의子	進士·文科	持平	
李 端	2	中 丞	鷄林君達衷의子	未 詳	未詳	
朴 苞	2	兼中丞	未詳	未 詳	未詳	開國功臣 2등
秦 瓊	2	雜 端	未詳	未 詳	未詳	
李 致	2	雜 端	未詳	文 科	糾正·持平	
李 舒	3	大司憲	延慶宮提學起宗의子	文 科	右諫議·右常侍	開國功臣 3등
朴 信	3	中 丞	未詳	文 科	糾正·正郎	元從功臣
權文毅	3	侍 史	未詳	未 詳	詳 未詳	
尹 彰	3	侍 史	未詳	未 詳	詳 未詳	
權 經	4	大司憲	侍中誠의後孫	蔭 補	密直副使	
李 潑	5	臺 官	文烈公兆年の曾孫	蔭 補	糾正	
禹洪道	5	臺 官	未詳	未 詳	詳 未詳	
曹 致	5	雜 端	未詳	未 詳	詳 未詳	
鄭 節	5	侍 史	未詳	未 詳	詳 未詳	
權 鼎	5	侍 史	未詳	未 詳	詳 未詳	

<表 1>을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출할 수 있었다.

즉 太祖代의 臺官(司憲府官員)은 개국공신 4名과 이성계의 추대를 반대하지 않은 名門出身의 官원으로 高位를 이루고 있고, 下位는 개국의 공도 없고 家門도 드러나지 않는 소위 新進士大夫로서 王朝交替에 불만

없이 새 王朝의 官員으로 넘어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얼마 후에 대개 政界에서 도태되고 있다. 또 그들은 대개 高麗末에 言官의 경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性分을 가진 臺官(司憲府官員)은 그중 개국공신세력이 선봉이 되어 이들의 權益과 일치되는 방향에서 言論활동이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太祖代의 諫官은 門下府郎舍(正三品以下)이다. 諫官의 신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表 2>를 작성하였다.

<表 2> 太祖朝 諫官身分 分析表

人 名	年別	職 銜	家 門	出身	前朝重要經歷	備 考
鄭 擢	1	直 門 下	政堂文學公權의子	文 科	糾正·正言	開國功臣 1등
李 滉	2	左諫議大夫	未詳	未 詳	門下舍人	
閔汝翼	2	右諫議大夫	驪興君玟의子	文 科	成均司藝	開國功臣 3등
安景儉	2	左散騎常侍	興寧府院君宗源의子	未 詳	執義	
李之剛	2	起 居 注	判典校寺事集의子	文 科	未詳	
尹 將	2	右 補 闕	未詳	未 詳	未詳	
王 裨	2	右 拾 遺	未詳	未 詳	右正言	
洪 保	2	散騎常侍	未詳	未 詳	掌令	
李居易	3	同 上	未詳	文 科	未詳	
鄭龜晉	3	起 居 注	未詳	登 科	未詳	
崔士剛	3	左 拾 遺	未詳	未 詳	未詳	
張至和	4	諫 官	未詳	未 詳	經歷	開國功臣 3등
李文和	4	諫 官	平章事之氏의代孫	文 科	正言, 應教, 司議	司議=諫議
韓尙桓	4	諫 官	未詳	未 詳	未詳	
李 皐	4	諫 官	未詳	文 科	執義·直提學	
李廷堅	4	諫 官	未詳	未 詳	右常侍	
全伯英	5	諫 官	未詳	文 科	執義·右司議	
黃 喜	6	拾 遺	判江陵府事君瑞의子	文 科 蔭補· 文 科	成均學官	

<表 2>를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출할 수 있었다. 즉 太祖代의 諫官은 대개 高麗末에 言官의 경력을 가진 新進士大夫出身으로 構成되어 있고, 그 안에 개국공신들을 배치하여 諫官의 言論을 개국공신의 權益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2) 王權強化와 言官의 言論

새 왕조를 세운 李成桂와 그 일파에게 긴급한 과제는 王權의 확립과 政治的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는 일이었다. 왕위는 이성계에게 넘어갔으나 高麗의 王族과 遺臣에 대한 처리는 새 王朝의 안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다. 정치적 안정은 이성계 자신뿐 아니라 모든 개국공신의 공통의 과제였다. 言官은 이 과제를 위하여 선봉에서 활약하였다.

1392년 7월 20일 이성계가 즉위한지 3일만에 言官은 前朝 王氏(王族)를 外方에 移置할 것을 언론했고, 이에 따라 太祖는 그와 관련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江華와 巨濟島에 나누어 두게 하였다. 이 언론이 즉각 받아들여진 것은 그 문제가 政治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舊勢力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온건한 조치를 하였던 것이다.

한편 言官은 과거 李成桂와 그 일파에게 불리하게 행동했던 反李派세력을 숙청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예를 보면, 門下贊成事(從1品) 金湊가 高麗末에 大司憲으로 있으면서 舊貴族의 편에 섰었고, 鄭道傳을 請罪한 사실을 들어 그를 탄핵하여 결국 파직을 시켰고(1392년 7월) 또 1393년 1월에는 高麗末에 李行이 李成桂에게 불리한 기록을 史草에 올렸다는 죄목으로 李行을 탄핵하여 숙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 왕조에 대한 유언비어도 철저히 단속하였다. 1392년 9월에 言官은 李扶 許陔등이 이성계에게 불리한 妖言을 퍼뜨려 衆心을 현혹케 하였다하여 탄핵하였고, 이들은 곧 먼곳에 流配당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는 완전히 불식되지 못하였다. 특히 온건하게 처리한 고려의 王氏와 遺臣들은 매우 불안한 존재로서 남아 있었고,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는 멀지않아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 기회는 1394년(太祖 3년)에 왔다. 즉 東萊縣監 金可行과 鹽場官 朴仲質등이 새 왕조의 안위와 王氏(高麗王族)의 운명을 밀양에 사는 盲人 李

興茂에게 점친 사실이 드러났고, 여기에 高官인 朴葳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에 言官은 이 事件의 관련자들을 탄핵하여 朴葳를 제외한 세사람을 流配보냈다. 그런데 이 사건은 逆謀의 혐의가 분명치 않으므로 朴葳의 일단 해결되면 일단락되는 셈인데, 言官들은 그날 上書로서 王氏(고려 王族)를 제거할 것을 청하고 있다. 그후 言官들은 20회에 가까운 言論을 행사하였는데 이제 그 언론의 단계를 정리해 보면

① 金可行등이 王氏의 운명을 점친 소소한 사건을 계기로 王氏를 海島에 격리할 것을 주장하였고

② 王和, 釋能등의 사건을 金可行 등의 사건과 연결시켜 사건을 확대하고 사태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恭讓王과 王氏들을 海島에 격리할 것을 주장 드디어 王康등을 流配시키는데 성공하였다.

③ 朴葳를 계속 탄핵하여 파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만약 이 사건이 모반사건이었다면 파직이 아니라 사형에 처하였을 것이다)

④ 恭讓王과 모든 王氏를 완전히 殺害할 것을 주장하였다.

⑤ 言官의 치열한 언론에 못이기는 체 하고 도평의사사로 하여금 언론을 묻게 하여 여론에 따르는 체 하며 공양왕 父子와 모든 王氏들을 살해하는데 성공하였다. 즉 言官은 金可行등의 사건을 王氏세력과 결부시켜 왕씨세력 제거의 구실을 삼았고, 계속적인 언론으로 사건을 확대하여 王氏제거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喚起·高潮시킨 후 王氏를 완전히 숙청하였던 것이다. 王氏의 제거는 당시 집권자들의 공동과제 였으나 여론의 반발을 피하기 위하여 言官의 言論을 통하여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언론이 계속되는 동안 言官은 한번도 징계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위요하고 왕과 言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여간 太祖代의 言官은 왕권의 확립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언론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太祖末에 이르면 王權과 개국공신의 利害관계는 일치하지 않

게 되고 따라서 상호 알력이 일어나게 되었다. 王權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비대해진 개국공신의 세력을 꺾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이 왕권을 준비하던 芳遠에 의하여 소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그 결과 鄭道傳·南閔·沈孝生·張至和·吳乙蒙등 개국공신들이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면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과거 王權과 개국공신의 이익을 대변하던 言官의 동태는 어떠한 것인가.

1398년(太祖 7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당시는 言官中の 개국공신세력은 거의 제거되었다. 그리하여 개국공신세력과 言官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며, 言官의 구성에 있어서도 그 전과 다르게 되었다. 이제 言官은 개국공신의 세력을 위하여 言論하기보다는 왕권의 안정을 위한 언론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국공신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언론에 가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太祖代에는 言官의 권위가 自由로운 言論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로 확립되지는 못하였다. 政治的 安定에 도움이 되고 국가의 이익에 일치되며 왕권에 영합하는 언론은 용납되었으나 왕권에 손상이 되거나 왕의 의지와 반대되는 언론에 대하여는 강력한 탄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393년에 內侍 李萬을 誅殺하고 世子嬪 柳氏를 私第로 쫓은 사건의 내막을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言官을 모두 流配시킨 일은 太祖의 言官에 대한 탄압의 한가지 예이다. 일탄적으로 太祖代의 言官의 言論은 왕권의 압력을 받아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 한 例를 보면 1396년에 言官들은 民弊를 이유로 築城의 役을 정지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太祖는 言官을 힐책하기를, 「都邑에 城이 없을 수 없는데 굳이 言論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너희는 너희 집에 들어가 명령을 기다리라」⁽³⁾라고 하고 言官에게 모두 停職을 명령하였다. 그후 築城의 役을 마칠때까지 약 반년 동안 言官들은 停職을 당하여 言官의 言論은 봉쇄당하였다. 이와 같은 조

(3) 太祖實錄 卷10, 太極5年7月丙寅條

쳐는 言官의 言論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太祖代의 言官들은 원만한 言論活動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3. 定宗朝의 言官言論과 王權

定宗은 재위 2년 2개월에 불과하였고 또 동생인 芳遠의 영향이 큰 시기였다. 비록 王位는 定宗이 계승하였으나 第一次 第二次의 王子의 亂을 통하여 개국공신의 세력을 꺾고 太宗(芳遠)中心의 王權을 준비하는 時期였다. 定宗때에는 言官內의 개국공신의 세력은 사취를 감추었고, 따라서 言官과 개국공신과는 그 利害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이 시기의 言官은 개국공신의 세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언론을 하고 있다.

1400년(定宗2년)에 단행한 私兵혁파는 功臣과 宗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王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때에 中央과 지방의 私兵과 軍器를 三軍府에 귀속 접수하는 일을 책임맡고 있던 趙英茂(개국공신), 趙溫(개국공신), 李天祐(좌명공신)등이 그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私兵을 거느리고 不惻을 피하였다고 言官으로부터 탄핵을 당하였다. 즉 言官은 私兵혁파에 비협조적인 趙英茂 등 功臣세력을 除去하는데 선봉이 되었고, 또 성공하였다. 言論은 王權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졌고 그것은 芳遠(太宗)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 밖에도 定宗代의 言官의 言論은 대개 王권강화를 위하여 행하여졌고, 王權에 저촉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징계를 당하였다. 定宗代에도 言官은 言官의 使命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얻지 못하였다.

4. 太宗의 言官言論에 대한 탄압

太宗은 그가 즉위하기 전에 ① 1·2次 王子의 亂, ② 都評議使司의 혁

파, ③ 私兵의 혁파 등을 통하여 개국공신의 세력을 꺾고 왕권강화를위한 기초작업을 완성하였으며, 즉위후에는 議政府署事의 制에서 六曹直啓의 制로 개혁하여 왕권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굳게 하였다. 이와 아울러 言官에게 대하여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1) 言官에 대한 彈壓

태종은 그의 治世 말년인 1418년에 신하들과 말하는 가운데

정권이 모두 언관에게 돌아가는 것은 마땅치 않으나 언관이 權力이 없는 것은 역시 마땅치 않다. 지금 이와같은 세상에 언관이 권력이 없으면 貪暴한 자들을 제어할 수 없다. (4)

라고 하고 있다. 언관의 권력이 왕권을 압도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부정한 관리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억제하기 위하여 언관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정치적 안정과 왕권강화를 위하여 언관은 필요한 것으로 太宗은 인식하고 있다. 태종이 언관을 탄압한 것은 왕권의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言官은 그들의 직책인 언론으로 인하여 被罰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언관의 언론은 때로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왕의 의지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언론이 공정성을 잃었다면 被罪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관의 언론은 지나치더라도 용납하는 것이 君主의 美德으로 삼는 유교정치하에서 지나친 징계는 언론탄압이라 하겠다. 이제 태종의 언론탄압의 몇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다.

1401년 7월 司諫院에서 토목공사를 정지할 것을 언론하다가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諫官이 옥에 갇힌 일이 있다. 이때의 토목공사가 宮室의 宮建이었으므로 왕과 직접 관계되는 일이기 는 하지만 즉각 압력을 가한

(4) 太宗實錄 卷35, 太宗18年正月己巳條.

것은 언관에 대한 강압의 조짐이 태종초부터 보이고 있음을 알겠다.

1403년 11월 자간원에서 府·州·郡·縣의 칭호를 定할 것을 청하였는데, 司憲府에서는 司諫院의 그와 같은 청은 그 職責에 어긋난다하여 諫官을 탄핵하였다. 결국 태종은 사헌부의 탄핵이 지나쳤다하여 臺官을 모두 파직시켰고, 간관도 부당한 언론을 하였다하여 지방관으로 좌천시키고 있다.

1408년 12월, 모반의 죄로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아 형집행이 결정된 陸仁海의 처형을 연기할 것을 청한 언관들에 대하여 流配와 左遷을 함으로서 언관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1409년 4월에 趙大臨의 軍事權을 박탈할 것을 언론한 언관들은 安岳·晉州·昌原등 먼 지방으로 유배 당하였다. 이처럼 태종대의 언관들은 언론으로 인하여 피죄되어 유배·파직·좌천 당하였다. 태종대의 언론탄압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몇개의 자료를 더 보도록 하자.

1408년 11월, 言官이 大臣을 탄핵하다가 유배 당하였을 때, 그 언관을 석방해 줄 것을 諫官 柳伯淳등이 청하는 가운데,

前日に 諫官은 그 언론이 거스린다고 하여 먼 지방에 유배되었고, 지금 憲司는 역시 언론으로 인하여 동서로 유배되어 數旬 내에 언관의 유배가 길을 이었습니다. (5)

라고 하였다. 當時의 史官은 이때의 분위기를,

처음 상감께서 노하여 臺官을 옥에 가두고 체찍질을 하였다. 諫官은 두려워하여 감히 언론하지 못하였다. (6)

라고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공정한 언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河崙의 말과 같이 조선이 개국한 이래로 형을 받지 않은 언관이 없을 정도로 언관들은 계속 왕권에 의하여 탄압을 받았던 것

(5) 同上 卷16, 太宗8年11月乙巳條

(6) 同上條 참조.

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언관에 대한 좌천·파직·유배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이 시기의 언관들은 언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려 노력하였음을 짐해 주는 것이다.

(2) 言論封鎖

유교정치를 표방한 그 시대에 있어서 언관에 대한 가혹한 탄압은 미덕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왕권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언론이면 언관을 크게 징계하지 않고 다만 그 언론을 봉쇄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이제 태종의 言論封鎖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승정원으로 하여금 언관의 언론을 차단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개 언론은 承政院을 통하여 왕에게 上達되는 것인데, 승정원에서 언관의 언론을 접수하지 않고 왕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언론은 봉쇄될 수 밖에 없다. 그 예는 많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둘째, 언관이 辭表를 올리면 즉각 受理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는 방법이다. 대개 언관들은 그 언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단 辭表를 내기 마련이었고, 대개 그것은 반납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태종은 사표를 즉각 수리했을 뿐 아니라

지금부터 臺諫의 직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전일에 臺諫의 자리를 모두 채우지 아니한 것은 이와 같이 번거로움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다⁽⁷⁾. 나는 臺諫을 복직시키지 않겠다.⁽⁸⁾

라고 강경한 태도로 나오기까지 하였다.

셋째, 언관의 언론이 잠잠할 때까지 政事를 연기하는 方法이다. 1412년 9월에 朴夢 등의 죄를 청하는 언관의 인론을 막기 위하여 정사를 연기한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넷째, 언관의 朝參 또는 朝啓에의 참석을 거절하는 방법이다. 朝參은

(7) 太宗實錄 卷23, 太宗12年3月庚子條

(8) 同上條

정기적으로 朝臣이 正殿에 나온 왕을 뵙고 정사를 논의하는 모임이고, 朝啓는 왕이 매일 大臣과 近臣을 접견하고 政治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諮問하기 위한 모임이다. 왕에게 직접 언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박탈하면, 언관의 언론은 약화됨을 면할 수 없다.

다섯째, 언론의 방법을 規制하였다. 언론에 章疏를 쓰지 못하게 하고 승정원을 통하여 말로만 하게 하는 방법이다. 글을 쓰더라도 세세한 것은 상달할 수 없는데 말로 하면 깊은 뜻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承旨가 말을 전할 때에 원래의 취지를 잘못 전할 수도 있으므로 이 방법은 언론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특히 직접 언론하는(面陳)의 기회가 정지된 시기에는 언관의 언론의 약화 내지 봉쇄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여섯째, 중국의 故事 또는 古典에서 보이는 「三諫不聽則去」의 活用이다. 즉 言官이 세번 간쟁을 하여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떠난다는 것이다. 그 예를 보면, 1411년(태종11년)에 언관의 權近과 河崙에 대한 탄핵언론을 이 방법을 써서 압력을 가하였고, 1414년에도, 1415년에도 이 방법으로 언론을 封鎖하였다. 태종은 언관이 三諫不聽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종신토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고, 1415년에는 언관이 闕無恤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므로 모두 사직을 하였을 때 태종이 언관을 불러 꾸짖으며 이르기를,

언론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언론이 응답되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다. 이는 魯나라에서, 齊나라에서, 楚나라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증략) 지금부터 사표를 내고자 하면, 濟州島는 비록 海外에 있으나 나의 땅이니 일본이나 요동으로 달아나는 것이 옳다.⁽⁹⁾

라고 하였다. 일본이나 요동으로 떠나갈 자신이 없으면 잠잠히 있으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계속되었고, 1416년에는 다음과 같은 教

(9)太宗實錄 卷30, 太宗15年7月癸丑條

諍言이 내려지게 되었다.

세번 간쟁하여도 허락되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 옛법이다. 지금 관료와 언관들이 세번 이상 上疏를 하는 것은 古制에 어긋난다. 또 衆人이 알게 되니 역시 未便하다. 지금부터 이와같은 官員이 있으면 「教旨不從」(王命을 따르지 않은)의 법으로 죄를 논하겠다.⁽¹⁰⁾

이처럼 태종은 언론을 봉쇄하기 위하여 강력한 압력을 가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언관의 언론은 탄압과 봉쇄를 당하였으나 언관은 굴하지 않고 언론을 계속하였으며, 따라서 언관에 대한 좌천·파직·유배가 끊이지 않았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언관들은 그들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려 노력하였던 것이다. 물론 태종도 모든 언론에 대하여 탄압을 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건설적인 언론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고, 王權에 저촉되지 않는 언론이면 辭表를 올려도 곧 반환하였던 것이다. 태종의 언관에 대한 탄압은 그의 왕권강화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될 것이다.

5. 世宗의 言官言論에 대한 優容

世宗朝는 세종 18년을 전후로하여 전반기와 후반기의 정치적 분위기가 또는 언론의 분위기가 확연히 區別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그의 재위 전반기에 있어서는 언관언론에 대하여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것은 上王(太宗)의 언관에 대한 강경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또 上王이 승하하기 이전에는 世宗은 上王의 영향하에 있었고, 따라서 太宗代와 비슷하게 언관에게 강경책을 썼다. 그리하여 세종 전반기에는 언관들은 언론으로 인하여 좌천·파직·下獄되는 경우가 잦았다. 언관들이 자주 옥에 출입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자료에 의해서도 짐작할 수

(10) 同上 卷31, 太宗16年6月甲子條

있다. 당시 言官에 임명되면 義禁府의 獄卒들이 말하기를

今日에는 비록 憲司에 앉아 있으나 明日에는 반드시 하옥되어 나의 制御를 받을 것이다. (11)

라고 하였다 하며, 또 세종이 黃耆·孟思誠·許稠 등 大臣을 불러 말하는 가운데

내가 듣건대 言官은 서우 任命狀이 내려가면 의금부의 胥徒가 서로 말하기를 ‘저 사람이 비록 오늘 임명되었으나 명일에는 반드시 獄囚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하며, 親族들도 역시 ‘상서롭지 못한 職에 除授되었군’ 하며 서로 위로한다고 한다. 그러하니 언관이 큰 잘못이 없으면 특별히 優容하여 加罪할 必要가 없다. (12)

라고 하고 있다. 즉 세종조 전반기에 있어서 언관들은 옥문출입이 무상하여 언관의 직을 상서롭지 못하게 생각할 정도였으므로 言官에 대하여 優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세종 24년에 세종이 말하기를

나는 初에 언관이 비록 小過를 범하였어도 반드시 죄를 주었다. 이로써 언관은 모두 오래지 않아 遞任되었으니 이 어찌 옳은 것이겠는가, 近年이래로는 小過는 용서하였다. (13)

라고 한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즉 세종은 전반기에 있어서는 언관의 직무상의 과실에 대하여서도 강경하여 징계가 잦았으나 점차 관대하여졌음을 절하여 준다.

그러나 전반기에 있어서도 세종은 언관의 언론을 聽納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들의 언론이 名分이 있다고 인정되면 탄압은 가하지 않았다. 언관의 언론이 그의 의지와 상반되더라도 명분이 있으면 징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例가 讓寧大君에 관한 언론이다. 讓寧은 태종에게 죄를 입고 利川에 流謫되어 있었는데, 世宗은 그의 舅인 양녕을 가까운 곳에

(11) 世宗實錄 卷61. 世宗15年閏8月戊戌條

(12) 同上 卷61. 世宗15年閏8月癸巳條

(13) 同上 卷98. 世宗24年10月辛亥條

불러 놓고, 때때로 만나보았고, 講武行幸에도 수행케 하였으며, 마침내는 서울에 집을 짓고 살게 하였다. 세종 6년부터 22년에 이르는 약 15년 동안 수십차례의 반대언론이 그치지 않았으나 세종은 그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언관에 대한 징계도 없었다. 세종이 양녕을 가까이 한 것은 그의 사사로운 의사이나 국가적으로는 크게 해로운 것이 아니며, 이에 반하여 세종의 의지를 포기시키려는 언관의 언론도 명분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종은 언관에게 징계를 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辭表를 제출한 언관에게 복직을 명하였던 것이다.

세종 후반기에 있어서 언론이 가장 폭주한 것은 「世子攝政」문제와 佛敎문제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언관의 언론활동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세종의 언관에 대한 태도와 분위기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은 일찌기 여러가지 身病이 있어 세종 19년에 벌써 세자로 하여금 서무를 처결케 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집념은 마침내 1442년에 詹事院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첨사원은 세자로 하여금 攝政케 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언관은 1개월 동안 16차에 걸쳐서 첨사원의 설치를 철회할 것을 언론하였다. 첨사원의 설치를 반대하는 근거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명분은, 政權이 돌르 나뉘는 의혹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1개월 여에 걸친 언관의 완강한 언론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철하였으며, 언관에게도 하등의 징계도 가하지 아니하였다.

1443년(세종25년) 4월에 세종은 身病을 구실로 하여 三大朝賀와 초1일일의 朝參을 제외한 朝參을 세자로 하여금 南西受朝케 하고 一品이하는 庭下에 拜하여 稱臣케 하여, 庶務는 모두 世子の 결재를 받으라는 교지를 내렸다. 이때에도 이에 반대하는 언관의 언론이 비등하였으나, 언관의 언론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 어떠한 징계도 없었던 것이다.

불교를 배척하는 언론은 세종대에 계속 있어온 것이다. 그중 가장 집

중적이었던 것은 ① 1441년 11월·12월의 興天寺舍利閣慶讚會의 停止를 위한 것과 ② 1448년 7월·8월의 內佛堂의 건축을 정지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①의 경우 언관은 20회의 반대 언론을 하였으며, ②의 경우 臺諫과 집현전은 26회의 반대 언론을 하였다. 이와 같이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그의 의지대로 決行하였을 뿐 언관에 대한 탄압이나 징계는 없었다.

세종 전반기에 비록 언관에 대하여 관용하지는 못하였으나 태종대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되었고, 명분있는 언론은 왕의 의지에 상반되더라도 징계하지 않았다. 세종 20년대에 들어와서는 언관의 언론활동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을 유교정치의 進展에 들 수도 있겠다. 그 전반기에는 집현전을 통하여 많은 儒學者가 양성되었고, 그 학자들을 동원하여 유교적인 儀禮·制度와 많은 편찬사업이 이루어져 유교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완성된 시기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원인을 들 수도 있겠다. 세종 18년(1436)에 六曹直啓의 制가 議政府署事制로 개혁된 것도(절자보다 후자가 유교정치의 이상적인 상태이므로) 유교정치의 진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世宗의 건강문제가 오히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세종은 그의 건강을 이유로 그 19년(1437)에 이미 세자로 하여금 서무를 결재시키려 하고 있었다. 세종은 그 이전부터 건강이 나빴으며 世宗 18年(1437) 전후에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육조직계의 制를 의정부서사의 制로 개혁한 것도 政務가 왕에게 폭주하는 육조직계의 制를 그의 건강상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와같은 생각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것은 世宗24年(1442)에 詹事院을 설치하여 세자의 섭정을 제도적으로 확정해 놓았고, 그 이후부터 세자의 섭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세종의 건강의 악화, 이에 따른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 후

반기의 정치적 성격, 언론의 분위기를 일변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하여간 세종 후반기에는 언론에 대하여 탄압이나 징계한 예를 거의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언론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언론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는 왕권이 확립되어 있었으므로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언론을 탄압할 必要는 없었던 시기였다고 하겠다.

6. 文宗朝의 言官言論과 王權

文宗은 世宗末期에 世子로 있으면서 섭정을 했으므로 政治의 경험을 가지고 즉위하였다. 그러므로 文宗의 政治方法은 世宗末의 그것과 크게 변한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在位 2년 4개월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특기할만한 것은 별로 없다. 세종말기에는 세종이 身病으로 인하여 政治에 온 힘을 쏟지는 못하였으나 王權은 依然하였다. 그러나 世宗이 昇遐하고 文宗이 즉위하면서 王權은 약간 위축된 감을 갖게 된다. 首陽大君, 安平大君 등 宗室세력의 대두도 그러한 분위기를 질게 하고 있다. 首陽·安平과 言官이 不和하게 되는 것도 言官이 宗室세력을 견제하려는데서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世宗이 昇遐한 직후에 世宗을 위한 造佛·建寺·寫經 등의 佛事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言官들은 20여회의 강력한 반대 언론을 하였다. 이와 같은 言論은 儒者的 言官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文宗 즉위년(1450) 3월에 首陽大君과 安平大君이 文宗에게 上書하기를

臣이 듣건데 諫官 黃孝源이 昨日에 佛事를 諫하러 왔으나 不允하시매 私事로이 承旨 鄭而漢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뜻은 今昔에 만든 佛像·佛經·佛寺를 모두 불사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합니다(中略) 黃孝源은 世

宗朝에 出仕하여 이미 諫官이 되었으나 일찌기 이에 언급함이 없었다가 지금 昇遐하신 初에 公然히 언론함이 기탄이 없으니 이는 先君(世宗)을 拒諫하는 왕으로 만드는 것이요…新君을 두렵게 생각지 않고 반드시 자기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니 이는 先君을 지나치다고 보고 新君을 우롱하는 것이니 어찌 臣下의 道理겠습니까. 이는 바로 謀反大逆이니 하지 못할바가 없는 者입니다. (14)

라고 하였다. 首陽大君 등의 이와같은 上書는 王權을 庇護하는 듯하면서도 오히려 王權을 손상시키는 말이었고 言官에 대한 상당한 위압이었다. 그러나 言官은 이에 구애하지 않고 首陽·安平등의 방자한 거동을 거침 없이 탄핵하였다. 그 예를 보면 1451년(文宗1년) 10월에 司憲府에서 犯法한 僧을 잡아 枷(칼)을 채우고 送致하는 것을 首陽大君이 路上에서 보고 自意로 枷을 풀어주고 자기집으로 데리고간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言官은 首陽을 탄핵하였다. 諫官 趙元禧는 安平大君이 忠清道 福泉寺에서 作弊한 사실과 首陽의 放恣한 행동을 탄핵하며 ‘宗室의 不法을 작을때 制御하지 않으면 장차 큰 것을 制御할 수 없으며, 오늘에 禁하지 않으면 후에 반드시 큰 不法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언론했다. 言官들의 이와같은 언론은 王權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王權에 위협이 될 수 있는 宗室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言官은 政府 大臣들을 공격하여 大臣들이 모두 辭職하기에 이를 정도로 몇몇한 言論을 행사하였다. 文宗代의 言官의 이와같은 言論은 王權의 保護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7. 端宗朝의 言官言論과 王權

端宗이 12歲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매 重臣들의 책임은 무거워졌고 즉위敎書에 의하여 議政府의 권한은 더욱 커졌다. 政治的 실권은 領議政

(14) 文宗實錄 卷1. 文宗즉위年3月丁未條

皇甫仁, 右議政 金宗瑞 등에게 돌아갔고, 따라서 모든 政事는 의정부에 자문하여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皇甫仁·金宗瑞의 실권은 1453년(단종1년) 10월에 首陽大君에 의하여 박탈당하였고, 그후 首陽大君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와같은 實權者의 변동에 따라서 言論의 분위기와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議政府大臣에게 實權이 있을때에는 言官의 言論이 정당한 경우라도 端宗은 議政府의 주장에 따르고 있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언론은 형식적으로는 王에 대한 것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의정부大臣의 意志에 의하여 容納되기도 하였고 거절되기도 하였다. 金宗瑞는 端宗에게 ‘諫官의 言論은 狂簡한 것이니 介意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그를 탄핵하려는 言官에 대하여

이 사람들(臺官)이 大臣을 해하고자 하니 斬하는 것이 옳다. (15)

라고 하였고, 이로부터 김종서는 매번 經筵에서 아뢰기를

古人의 말씀에 政權이 臺閣에 들어가면 天下가 어지럽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상감께서는 新進臺諫(言官)의 言論을 듣지 마소서. (16)

라고 하였다. 김종서는 實力者인 자기에게 거리낌 없이 탄핵하려는 言官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었고, 言官의 언론을 누르기에 고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言論을 봉쇄하기에 힘썼고, 또 그들에게 향한 날카로운 언론을 막기 위하여 예리한 언론을 행사하는 言官을 轉職시키는 등 언론에 대한 人事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시기의 왕권은 극도로 약화되었고, 반면 皇甫仁·金宗瑞등 의정부대신들의 권한이 비대해짐에 따라 이들에 의하여 언론의 언론은 봉쇄당하거나 위협을 당하였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言官의 言論은 예리하였던 것이다. 癸酉靖難(1453

(15) 魯山君日記 卷7. 端宗元年7月庚午條

(16) 同上條

년 10월) 이후에는 王權은 더욱 약화되었고 모든 권력이 수양에게 집중된 상황하에서 言官의 언론은 더욱 억압당하였다. 그리하여 言官은 자주 下獄·左遷·罷職되었다. 단종 2년 8월(1454)에 사간원에서 全州府尹 등 地方官에 대한 인사에 異議를 제기하고 改差를 요구하다가 推鞠을 당하였고, 마침내는 모든 간관이 축출당한 것은 그 한 例이다. 수양대군은 교묘하게 언관을 탄압하였고, 언론을 봉쇄하였던 것이다.

8. 世祖의 言官言論에 대한 탄압

世祖가 즉위한 후 급선무는 端宗대에 실추된 왕권을 회복·강화하는 일이었다. 그 첫째 작업이 議政府署事의 制를 六曹直啓의 制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 必要한 작업은 그의 즉위를 부당한 것으로 보는 많은 유신들의 세력을 꺾고 그들의 言論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려운 세력이 학문에 조예가 깊은 집현전 관원과 그 출신이었다. 세조가 육조직제의 制로 고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 언론을 한 것이 그들이었다. 世祖는 死六臣사건을 계기로 그에게 날카로운 언론을 행사하던 많은 유신을 숙청하였으며, 집현전을 폐지하고 經筵의 制도를 없앴다. 이는 간쟁과 言論을 잘하는 유신과 자리를 같이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였기 때문에 言官의 언론도 優容되기 어려웠다.

世祖 6年 5월에 諫官 7명중 4명을 減員하였을 때 臺諫은 적극 그 不可함을 言論하였으나 容納되지 못하였다. 世祖는 言官의 存在價置에 否定的 이었고, 「言官이 아니라도 言論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言官을 輕視하는 상황하에서 言官이 아닌 다른 官員의 言論을 기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世祖 3年 7월에 司憲府와 司諫院에 보낸 傳旨를 보면 當時의 분위기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그 傳旨에

내가 즉위한 이후 言官은 盡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얻지 못하였다. 하나는 艱難과 재앙을 모두 경험하였으므로 백성의 疲苛를 言論하여도 介意치 않는 것이요, 하나는 내가 佛敎를 좋아하므로(佛敎에 대하여) 言論하면 반드시 怒하는 것이요, 하나는 작은 일을 言論하면 반드시 거절하여 瑣瑣하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는 내가 嚴威가 있어 言論하면 得罪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니 이로써 言官들은 進退하며 商量하나 議論이 一致되든 안되든 職任을 수행하지 못하니 내가 그 폐단을 알고 있는 것이 오래되었다. (17)

라고 世祖 自身도 當時 言官들이 言論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음을 認定하고 있다. 또 世祖 14년에 大臣 洪允成을 彈劾한 臺諫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言論을 嘉尙히 생각한다. 臺諫의 이름은 다만 옛날에 들었고 그 사람을 보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서 크게 되었다. (18)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좀 과장된 감이 없지 않으나 그것은 결국 自招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言官의 言論은 輕視당하거나 거절되기 일수였다. 심지어는 言官을 小人·豎儒라 하였고, 그 言論을 妄言·妄說이라 하였고, 威壓을 가하였다. 그 例는 枚擧할 수 없으나 言官들은 言論으로 인하여 자주 推鞠·左遷·罷職을 당하였다. 世祖代에 言官의 言論이 얼마나 위축을 당하였는가는 言論을 심하게 彈壓·封鎖하였던 太宗代에 月平均 4.2회의 言論이 있었는데 비하여 世祖代에는 2.9회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世祖代는 王權強化策으로서 言論을 탄압하였고 또 強化된 王權에 놀려 言論이 위축된 시기였다.

9. 睿宗·成宗初의 言官言論과 權臣

睿宗은 即位한지 1年 2個月만에 昇遐하였고, 그 위에 世祖妃 尹氏가 垂簾聽政하였으며, 申叔舟·具致寬등이 院相으로 庶政을 議決하였으므로

(17) 世祖實錄 卷8. 世祖3年7月壬申條

(18) 同上 卷45. 世祖14年3月癸亥條

王權은 弱화된 시기였다. 睿宗은 世子時에 承命代理로 政務를 보았으므로 世祖의 言官에 대한 施策을 익히 보아왔고,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았음인지 言官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國喪中에 姦生을 奸한 忠淸道觀察使 安哲孫을 彈劾한 言官이 오히려 左遷・罷職된 일이나, 上疏의 內容이 거스린다하여 臺官을 罷職시키는 등의 처사는 그 例이다. 睿宗은 비록 在位기간은 짧았으나 言官의 言論은 優容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成宗은 13歲에 즉위하여 그 7年까지는 尹大妃가 垂簾聽政하였고, 또 院相들이 政事를 보좌하였기 때문에 政治는 이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成宗 초기에는 王權이 강화될 수 없었고 院相의 政治權力이 肥大해졌다. 이 時期 臺諫은 院相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言論을 행사하였고, 院相 등은 幼冲한 王을 업고 言官에게 壓力을 가하고 있다. 그 결과 言官들만이 懲戒당하였다. 藝文館副提學 李克基등이 올린 「時務十條」 가운데

近來 臺諫은 大臣의 일을 論함으로써 左遷된자가 있고 사람의 과실을 彈劾하다 징계된 자가 있습니다. (18)

라고 한 것은 그와같은 분위기를 전하여 주고 있다. 이와같이 院相의 세력이 肥大해진 成宗初에 있어서 言官의 言論은 大臣들에게 壓力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言官들은 이에 구애하지 않고 院相・大臣에 대한 彈劾도 거침없이 하였던 것이니, 朝鮮開國以後 가장 言論이 폭주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부터 政界는 勳舊大臣의 세력이 肥大해졌고 한편 점차 新進세력(士林)이 진출하여 權力구조, 政治的 분위기가 일변하는 시기로 접어든다.

(19) 成宗實錄 卷32. 成宗4年7月己未條

結 語

儒敎政治를 표방한 조선왕조에 있어서 言論은 政治的으로 큰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言論의 通塞는 儒敎政治의 盛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當時 儒臣들은 言論의 暢달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朝鮮初期는 일반적으로 왕권이 강화 또는 안정된 시기였으나 言論의 분위기는 자유롭지만은 않았다. 특히 武斷的인 王權을 이룩한 太宗代와 世祖代는 가장 言官과 言論이 탄압을 받았다. 王權을 強化하는 과정에서 言官과 言論은 彈壓과 封鎖를 당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朝鮮初期의 言官들은 王權이나 權力의 威壓에도 불구하고 言官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言官의 言論이 있었기 때문에 朝鮮初期의 政治는 비교적 健全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겠다.